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	보도 참고자료	
보도	2017. 7. 28.(금) 조간	배포	2017. 7. 26.(수)
담당부서 	자본시장감독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	장준경 국장(3145-7580) 설인배 국장(3145-5700)	석준원 팀장(3145-7616) 김 신 팀장(3145-7590) 김성균 팀장(3145-5702)

제 목 : 금융꿀팁 200선-⑤⁹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(3) : 금융투자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
 - 매주 1~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-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[fine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쉰아홉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(3) : 금융투자”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

<별첨> 금융꿀팁 200선-⑤⁹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(3) : 금융투자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제 목	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(3) : 금융투자
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사례1) 김여유씨(70세, 가명)는 은퇴후 여유자금을 주식,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싶었으나, 그간 투자경험이 없어 주저하다가 증권사 영업점 앞에서 발길을 돌렸음 ■ (사례2) 박지수씨(70세, 가명)는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단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홍콩 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(ELS)에 투자하였으나, 항셍지수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의 투자의도와 달리 만기(3년)까지 장기간 보유하게 되었고 원금도 손실이 발생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■ (사례3) 최고령씨(75세, 가명)는 노후자금을 주가연계증권(ELS)에 투자한 이후 가족으로부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후회하였으나,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만 알고 철회하지 않았음
꿀팁	<p>☞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아래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 어르신을 위한 금융투자 꿀팁 5가지 】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10px; background-color: #f9f9f9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❶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 활용 ❷ “투자권유 유의상품”에 대한 투자는 신중 ❸ “부적합확인서”까지 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삼가 ❹ ELS 등 투자시에는 “적합성보고서” 확인 ❺ ELS 등에 투자한 경우 “투자자 숙려제도” 활용 </div>

제 목	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(3) : 금융투자
	<p>①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 활용</p> <p>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7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증권사 등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였을 경우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문상담직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또한, 영업점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하여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,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만약 가족과의 통화가 쉽지 않다면 해당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<붙임1> '고령투자자 보호제도' 참조</p> <p>② "투자권유 유의상품"에 대한 투자는 신중</p> <p>주가연계상품(ELS), 주가연계신탁(ELT)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,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"투자권유 유의상품"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</p> <p>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면 본인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/p>

제 목	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(3) : 금융투자
	<p>※ 투자권유 유의상품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지정사유) 상품구조, 가격변동성,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난해하고,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해 고령자에게 강화된 판매절차 부과 ■ (상품유형)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(ELS),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된 신탁(ELT), 파생상품 관련 펀드(ELF), 파생상품 등 <p>③ “부적합확인서”까지 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</p> <p>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.</p> <p>또한,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/p> <p>한편,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“부적합확인서’를 작성해야 합니다.</p> <p>따라서 어르신들이 고수익을 쫓아 “부적합확인서”까지 작성하면서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.</p>

제 목	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(3) : 금융투자
	<p>④ ELS 등 투자시에는 “적합성보고서” 확인</p> <p>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는 “적합성보고서”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</p> <p>“적합성보고서”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.(<붙임2> 참조)</p> <p>따라서 어르신들이 ELS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“적합성보고서”的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</p> <p>⑤ ELS 등에 투자한 경우 “투자자 숙려제도” 활용</p> <p>‘17.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 하였을 경우에는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“투자자 숙려제도”(<붙임3> 참조)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</p> <p>따라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에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, 철회 방법 등을 확인하여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

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투자자 분류

- (고령자)** 70세 이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연령
- (초고령자)** 80세 이상으로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연령

2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체계 정립

- (전용 상담창구 마련)** 고령자 정책 및 교육 전담인력을 관련부서에 배치하고, 영업점·콜센터에 전문상담직원 지정·운영
- (조력자 연락처 확보)** 계좌개설 또는 상품투자시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를 제공토록 하여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
- (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)** 구조, 가격변동성,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*을 “투자권유 유의상품”으로 지정
*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(원금보장 제외), 파생상품 관련 펀드, 신종자본증권 등
- (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)** “투자권유 유의상품”에 대하여 관리직 직원(지점장 등)이 투자권유 적정성을 사전확인 후 판매

3 초고령자에 대한 강화된 판매절차 마련

- (부적합한 초고위험상품 판매 자제)**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경우 판매 자제
- (가족조력 기회 부여)** 투자 결정전 가족 조력을 받도록 안내하고, 조력을 받기 곤란한 경우 관리직 직원 동석
- (사후점검 강화)** 담당 직원을 사전 지정(콜센터, 관리직 직원 등)하여 권유절차 적절성 사후 모니터링 실시

-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등에 맞추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사유 등을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

❶ (적용대상) 금융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, 그 상품이 자신의 투자수요에 맞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

- (상품)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 등*에 적용

* ELS, ELF, ELT / DLS, DLF, DLT

- (투자자) 신규투자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

❷ (기재내용) 투자성향,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을 기재

- (투자성향) 투자자의 투자목적·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*

* 예시) 공격형 투자자, 적극형 투자자, 중립형 투자자, 안정형 투자자 등으로 구분

- (투자권유 사유) 투자자의 투자수요(투자자금 성격, 투자예정기간) 및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

- (핵심 유의사항) 재무상황,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(상품의 손익구조, 만기구조 등)

❸ (교부시점) 금융상품 계약체결 前 「적합성 보고서」 작성·교부

붙임3**투자자 숙려제도(2017.4월 시행)**

- 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이후 숙려기간(2영업일 이상) 부여

- ① (대상상품)**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(ELS·DLS) 및 신탁·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(ELT·ELF 등)*

* 적용배제 : 파생결합사채(ELB·DLB), 온라인 판매,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, 사모방식

- ② (대상투자자)** 일반투자자(법인 제외)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* 및 고령투자자(70세 이상)

*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

- ③ (적용방식)**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, 이후 숙려기간(2영업일)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

ELS 청약기간 및 숙려기간(예시)

구 분	T	T+1	T+2	T+3	T+4	T+5
비대상투자자	청약가능 · 취소가능					ELS 발행
대상투자자	청약가능 · 취소가능		[숙려기간] 청약불가* · 취소가능			ELS 발행

* 숙려기간은 최소 2영업일 이상으로 적용, 대상투자자(부적합투자자, 고령투자자)는 숙려기간 중에는 신규청약이 불가하고 취소만 가능

- ④ (추가안내)** 청약일 익일(또는 익익일)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(녹취)*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**

* 유선연락 거부 투자자는 예외 가능, SMS 등 투자자가 선택한 안내 수단 활용 가능

** 안내 필수사항 : ① 상품의 위험성(원금손실 가능성 등) 추가 고지, ②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투자할 것, ③ 취소가능 기한 및 취소 방법 등